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5호 2021. 11. 29.(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90호)

공 고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80호)

예 규

- 예천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예천군 예규 제2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고시 제 2021-90호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금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9.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4. 사 업 비 : 1,557백만원(국비 1,025, 도비 156, 군비 276, 자부담 100)
5. 주요 사업내용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철거 27호, 지붕개량 22호, 집수리 10호, 빈집철거 8호
 - 안전위생 확보 : 재래식화장실정비 5동, 축대정비 L=42m, 방범용 CCTV설치 3개소
 -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안길 확포장 L=97m
 - 주민공동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신축 1동, 공동어울림공원 조성
 - 경관시설정비 : 담장정비L=275m
 - 휴 먼 케 어 : 찾아가는의료서비스, 치매예방수공예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초청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 붙임참조
8. 사업시행기간 : 2020년~2023년(4년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6) 및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0-7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개포면 금리	산66	임	3,174	1,586	예천군		
2	개포면 금리	산65	임	3,174	53	함양박씨대문중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173	
3	개포면 금리	674	구	21,080	47	국 (농림부)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심신의 안정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7조 ~ 제8조)

- 악성민원 대응 정책 마련, 심리상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도입,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지원방법, 지원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전문심리상담사 활용, 전문 기관 등에 교육 및 연수 위탁 운영, 공무원 보호 정책 마련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정함(안 제12조 ~ 제16조)

- 민원응대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42, 팩스 : 054-650-6309
- 전자우편 : rrtt697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협박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원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3.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2. 심리상담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 · 공간
4.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
과 소송절차 및 방어비용의 지원
5.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
입
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
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시
3. 기타 군수가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
2.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후생복지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2.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
- 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1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2호

예천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예천군수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 및 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직장 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 조치
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 고충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 및 심의·의결권자는 조사 과정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여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책무) 군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3장 2차 피해의 사건 처리

제9조(2차 피해 사건 접수)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군수가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사건 조사) ① 군수는 여성폭력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가 조사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2차 피해의 내용이 법 제3조제3호다목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의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군수는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의거 예천군 실정에 맞는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하여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나. 지침의 적용 대상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 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제6조 ~ 제8조)
- 마. 2차 피해 사건 처리과정,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1조)
- 바. 고충심의위원회,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통지,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제12조 ~ 제15조)